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법원행정처 부동산 등기과장(지방법원 등기과장)
(경유)

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요기관 반려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2012년 본인서명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동안 인감증명 감축과 본인서명확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수요기관(등기과)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과 각종 문서상 서명필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기관이 『본인의 서명』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절차에 따라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였다면 다른 서면 서명과 글씨체가 다르더라도 본인이 서명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이러한 사유로 반려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이 발급이 가능하여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하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사무관	채종우	행정사무관	오종규	주민과장	전결 2019.3.29.
협조자					정두석
시행	주민과-1735	(2019. 3. 29.)		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151	팩스번호	044-204-8945	/ ab1926@mail.go.kr	/ 대한민국 공개